

대전지방법원 2021. 1. 22 선고 2019나1183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0. 12. 4

판결선 고 2021. 1. 22

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30. 선고 2019가단10047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 5/6에 관하여,피고와 C 사이에 2017. 2. 2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. 3. 22. 접수 제18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의 제2쪽 8행의 '피고에게'를 'C에게'로 수정한다.

○ 제1심 판결의 제2쪽 11행의 '피고는'을 '피고(C을 말한다)'는'으로 수정한다.

○ 제1심 판결의 제2쪽 13내지 14행의 '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'를 끼에 C이추완항소 하였으나, 2020. 6. 24.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'로 변경한다.

○ 제1심 판결의 제2쪽 16행의 '증여계약' 다음에 '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'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의 제2쪽 마지막 행의[인정근거]에 갑 제8호증,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.

2. 추가 판단

○ 제1심 판결의 제3쪽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의 항을 추가한다.

'3)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당초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2007. 12. 23.이고,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19. 1.

8.이므로, 이 사건 소는 상소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뒤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.

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7호증의 1내지 제8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C이 2007.

9.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

2007. 10. 13. 변제기에도달하였는데,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2. 9. 13.

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. 6. 5.

승소판결을 받았고, 2020. 7. 15.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,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신영희 판사 유석철 판사 신혜영

별지